IG 의 보상장 서식 검토

소 개

IG 의 Bill of Lading Committee(“Committee”)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 권장하는 보상장 표준 양식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화물 인도
-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항구 외에서의 화물 인도
-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항구 외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화물 인도

BIMCO 와의 연락을 통한 무역업자 및 용선자의 의견과 함께, 수년간 발행된 문구에 대한 수많은 논평이 Bill of Lading Committee 의 업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Committee 는 또한, 문구를 완성하는데 전직 해상 판사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비록 2009 년 Bremen Max 의 판결 결과로 Committee 에 의해 문구 서식에 대한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최초로 해당 문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Committee 는 그 문구의 전면적인 재작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에 접근하였습니다. 일부 논평가는 내용에서 중요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반면, Committee 의 토론 참가자는 보상장이 전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절차적 변화(예를 들어, 일련의 보상장에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는 단일의 보상장)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동안, English High Court 는 “MIRACLE HOPE”로 운송된 USD 76 Mil. 상당의 화물과 관련하여 발행된 일련의 보상장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일련의 판결에 따른 집행 문제와 보상장 문구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Committee 는 본 판결을 통해, 보상장 문구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현재의 보상장 문구를 다룰 때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 형식 또는 절차에 근본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자문 받았던 전직 판사가 인정한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초안은 예전 것의 진화입니다.

일반적인 논평

세 가지의 보상장 문구 모두 (기본 논리적 차이가 있는) 동일한 핵심 용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 가지의 보상장 서식 모두에 해당하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보상장의 서론 단락은 문서의 흐름을 개선하는 동시에 각 사례별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더 작은 단락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보상장 문구에 대해 비교적 적은 수의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지만, 보상장이 (통상적으로) 선주와 잠재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보상장을 발행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잘못되면 선박이 억류될 수 있으며, 선주는 보상장 발행인을 상대로 보상장의 조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대부분 피할 수 없는 특징이지만, 선주와 보상장 발행 당사자 모두가 보상장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체결 예정인 계약의 잠재적 높은 가치와 보상장을 제공하는 당사자의 신용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수취인에게 상기시키는 메모가 처음으로 서식 자체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메모는 또한, 수취인의 P&I 담보에 대해,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의 중대한 결과를 강조합니다.

Committee 는, 논의되는 여러가지 이유로, 메모에 영국법과 관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Committee 는 은행의 서명이 드물다는 것을 인정했지만(은행 자체의 문서만 사용할 수도 있음), 은행이 서명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표시한 견본 역할만 한다면, 은행 서명용 문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서명용 문구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 석

아래의 주석은 권고된 문구에 대한 수정 또는 다른 결정에 관한 Committee 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항구 외에서의 화물 인도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화물 인도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 사항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화물 인도,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항구 외에서의 화물 인도, 그리고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항구 외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화물 인도에 대하여, IG 에서 권고하는 세 가지 기본 보상장이 있습니다. 각 보상장에는 은행의 서명 조건을 규정하는 추가 버전도 있습니다. 보상장의 서문(각 사례별 운송인에 대한 요청을 폭넓게 설명)을 제외하고, 각 보상장의 핵심 조항과 은행 서명용 문구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각 보상장의 핵심 조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행 서명용 문구는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Committee 의 경험에 의하면, 은행이 보상장에 서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서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 자체의 문구 사용), 은행 서명용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와 은행에서 제시하는 문구를 비교할 수 있는 견본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 문구 모음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Committee 는 생각했습니다.

메 모

체결 예정인 계약의 잠재적 높은 가치와 보상장을 제공하는 당사자의 신용도 및, 수취인의 P&I 담보에 대해,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의 중대한 결과를 수취인에게 상기시키는 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

선박, 항구, 화물 및 선하증권에 대한 세부 사항

본 항목의 형식이 확장되어, 추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제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추가의 목적은, 어느 선하증권과 화물이 보상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전 단락

문서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보상장 문구의 첫 단락(한 문장으로 구성)을 두 단락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선하증권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요청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기존 언급은 “그러나 현재 선하증권을 제시할 수 없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화물에 대해 제시해야 하는 선하증권이 없는 수많은 이유 및 수하인이 이행할 수 없는 특정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포함합니다.

두번째 단락을 구성하는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요청자가 지명한 개인/회사(또는 합리적으로 그들이라고 생각되는 개인/회사)에게 화물을 인도하기 위한 요건은 유지됩니다. 운송인은 특정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상장에 기록하여 확인하기를 원할 수 있지만, 문구 서식에는 운송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넓게 남겨 두었습니다. 요청자가 하는 약속을 강화하고, 요청자가 하는 말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도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대리인/보증인이 추가되었습니다.

핵심 단락

Paragraph 1 –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Paragraph 2 –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항은, 2020 년 “MIRACLE HOPE” 소송에서 소송 절차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art 3 – 본 단락은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 세 개의 하위 단락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수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보상장 수취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선박 또는 재산이 억류되는 경우, 담보 등을 제공해야 할 명시적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일련의 보상장 중에 일부인 하나의 보상장을 받은 용선자가, 자신의 사선(또는 자신이 용선한 선박)이 담보 목적으로 억류되었다면, 그 용선자는 선박이 억류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의 소유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Sub-Paragraph (a)에 담보제공의무를 의도적으로 제한없이 남겨 두었습니다. 보상장 수취인이 선박 억류를 해제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담보가 억류 선박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보상장에 따라 해당 담보를 대체(또는 Counter-Security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보상장 수취인이 제공한 담보가 화물을 운송한 선박 또는 이로 인해 억류된 선박의 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순히 선박 및/또는 재산에 대한 추가 침해를 피하기 위한 담보 제공이 적절했다면, 보상장 수취인에게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Paragraph 4 – (액체화물이든 건화물이든) 벌크 설비와 관련하여, (a) 일단 양하가 이루어지면, 양하된 화물은 대량 화물의 일부가 되어 해당 화물을 다시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b) 수화주가 물리적으로 인도받지 못하더라도(예를 들어, 화물이 물리적으로 탱크집합지역 또는 저장고 등의 운영자에게 인도되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 단락이 수정되었습니다.

Paragraph 5 – 선하증권이 최종적으로 화물을 인도받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완료된 경우에만 보상장에 대한 의무가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 단락이 수정되었습니다.

Paragraph 6 –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Paragraph 7 – 보상장에 따른 집행 및/또는 분쟁에 대해 영국 법원을 배타적 관할로 지정하기 위해 본 단락이 수정되었습니다. 본 단락은 광범위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용선계약상의 준거법 및 관할 조항을 반영하거나, 준거법과 관할의 선택을 당사자 간에 협상하도록 맡겨 두는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영국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English High Court 에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절차를 통합할 수 있는 권한, 보상장 분쟁을 처리하는 English High Court 의 경험, 일련의 배상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한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의 활용, 일련의 보상장에 대한 집행을 상하로 쉽게 하기 위해 일련의 보상장에 준거법과 관할을 동일하게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수단으로 서식 문구에 명시적인 선택을 포함하는 이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서명 조항 및 메모

서명 조항이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보상장에 서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해당 당사자 확인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엄격한 조건 및 중대한 잠재적 재정 노출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됨을 강조하기 위해 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

서명한 사람이 해당 회사에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보상장은 무효라는 잠재적 주장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보상장에 은행의 동의가 포함된 문구

이러한 문구는 보상장 서식에 유지되어 왔지만, 은행은 관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행 자체 문구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은행 서명용 문구의 기존 버전에서는 누락되었던 Paragraph 2(보상 관련 문구의 Paragraph 3(b) 반영)만 수정되었으며, 은행이 요청자와 동일한 상황에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 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